

우송예술회관 운영규정

제정 201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우송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정신문화 향상과 교육목적의 활용 및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사용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예술회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에 둔다.

제3조(시설) 예술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일반연습실
3. 분장실
4. 대기실
5. 휴게공간
6. 오케스트라 피트
7. 조명, 음향 등 기타 부대시설

제4조(사업)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직원 및 학생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전시 등의 행사
2. 재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3.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각종 행사
4. 문화예술 및 이의 교육연계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5.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운영한다.

1. 예술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단, 총장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중 관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2.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문화 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3. 제2호의 단서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수탁 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관하여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5. 제2호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정운영은 독립채산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관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예술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4. 본 규정에 의한 관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관장은 예술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및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 변경신청은 사용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 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구체적 기재)
3. 사용 기간
4. 출연진 및 스태프
5.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예상인원
6. 사용목적에 의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7. 사용신청자의 주소, 성명
8. 관련기관의 공연 신고서 또는 허가서(외국인)
- 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예술회관의 설치목적과 위배되는 시설사용
2. 시설·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학원산하 각급 학교기관의 부문행사
4. 신청자가 제11조제1호, 제3호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정치행사 또는 종교행사 등의 특정성향을 띄는 경우
6. 기타 관장이 공익 및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환불) ①제7조에 의한 예술회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학 및 우송정보대학의 교육목적 사용은 이를 면제하며 공공기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순수예술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허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50%, 잔액은 사용전 14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공연 연습, 준비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대관은 기본 사용료의 50%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사용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목적인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미리 관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정기간 내에 사용료 체납의 경우
4. 교육목적 또는 공용 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중단신고) 예술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위협을 주는 자
3. 관람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원상복구) 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예술회관 사용 중 장내.외의 시설설비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기타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